

#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-제 호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08. 2.

발 의 자: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일치와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를 정비하며 「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치(안 제1조)

나. 「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」 개정에 따라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신도시조성사업소 삭제(안 제3조)

다. 국어맞춤법 등에 의한 자구의 정비(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제8조, 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붙임

나. 기 타

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## 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지방자치법」 “제50조” 를 “제56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 중 “신도시조성사업소” 를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잔임기간으로” 를 “남은 임기로” 로 한다.

제6조제1항, 제8조제1항, 제11조제1항 중 “1인” 을 각각 “1명” 으로, 제6조4항 및 제8조제3항 중 “동의를 얻어” 를 각각 “동의를 받아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<b>제1조(목적)</b> -----제56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b> ① ~ ② (생략) 1. (생략) 2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총무국, <u>신도시조성사업소, 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3. (생략)</p>	<p><b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b>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총무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, 정보통신담당관, 총무국, <u>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</b> ① (생략)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으로 한다.</p>	<p><b>제5조(상임위원의 임기)</b>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남은 임기로</u> -----.</p>
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</b>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상임위원장”이라 한다) <u>1인</u>을 둔다. ② ~ ③ (생략)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<u>동의를 얻어</u>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(상임위원장)</b> ① ----- ----- <u>1명</u>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<u>동의를 받아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b>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<u>1인</u>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 ② (생략)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<u>동의를 얻어</u>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<b>제8조(특별위원회의 위원장)</b> ① ----- ----- <u>1명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<u>동의를 받아</u> ----- -----.</p>
<p><b>제11조(부위원장)</b>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<u>1인</u>을 둔다. ② ~ ③ (생략)</p>	<p><b>제11조(부위원장)</b> ① ----- <u>1명</u>----- -----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<지방자치법>

**제56조 (위원회의 설치)**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**제62조 (위원회에 관한 조례)**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<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>

**제14조 (설치)**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**별표 2**와 같다.

[별표 2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4조 관련)

사업소명	위치
환경사업소	사천시 사등동 158번지
수도사업소	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126번지
하수도사업소	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200번지